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정 2022. 6. 1., 중소기업부 훈령 제1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부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2.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3.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데이터관리부서”란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5.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6. “데이터 전문기관”이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장관”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산·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의 종합·조정 및 운영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장관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통계기초자료(이하 “데이터 등”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1. 데이터 등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데이터 등의 관리·수집·저장·분석·제공·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
5. 데이터 등의 수집·저장·분석·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및 품질 관리, 평가
6. 데이터 등의 개방·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무
 -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 ③ 고객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한다.
 - ④ 소속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데이터 등의 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등의 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 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5. 데이터 등의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 사항

7.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고객정보화담당관
2. 본부 실·국 주무과장
3. 소속기관 등의 데이터책임관
4.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객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업무 조정)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다른 부서의 데이터 연계활용 또는 중복데이터 구축, 표준화,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

한 사항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 및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된 다른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8조(데이터 기반 시스템)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기반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반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2. 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
3. 데이터 수집·분석·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5. 가명정보 단일 창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기능 등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등의 분석에 기반시스템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 등의 수집·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 등을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부서”라 한다)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반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부서 등에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빅데이터 플랫폼)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서 지정하거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소관 분야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중소벤처 전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플랫폼의 정책활용 증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지정, 조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고객정보화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공공데

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과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표준을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총괄책임관과 데이터책임관은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 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장관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 실무협의회

제14조(협의회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은 고객정보화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데이터관리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자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 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업무담당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등 업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구축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등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제1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실태조사와 평가 등 처리

제18조(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①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